[사 건 명] 행심 2019 - 109

인천광역시징계조정위원회『재심 청구 기각 결정』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심 청구 기각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 ◇◇◇과 피해학생 A학생, B학생은 ◎◎학교(사립) 학생이다. 청구인의 피해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한다)가 개최되어 ◎◎학교장은 2019. 5. 10. 청구인에게 5호 심리치료 처분 조치하였다. 청구인은 학폭위 다음날인 2019. 5. 11. 담임교사에게 A학생에 대한 추가보복 예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학생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였고, 이에 A학생이 청구인을 특수협박 및 폭행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2019. 6. 3.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다. ◎◎학교는 2019. 6. 12. 학폭위를 개최하여 2019. 6. 14. 청구인에게 전학, 출석정지 15일,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조치하였다. 청구인은 전학 처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인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19. 7. 16. 재심청구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9. 7.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Ⅱ.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학교는 청구인의 피해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2019. 5. 10. 가해학생으로서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학폭위 개최 전인 2019. 5. 2. ‘저 학교가면 A학생 후려칠 거예요’라고 담임교사에게 보낸 협박 문자를 2019. 5. 11. 발송한 것으로 증거 조작하여 재차 학폭위 개최 후 2019. 6. 14. 청구인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는 동일한 건에 대한 중복 처분이므로 무효이다.

나. ◎◎학교는 학폭위 개최 전날, 학폭위 개최에 대한 서면을 등기우편이 아닌 학생 편에 보냈고, 문자로 참석 통지를 하였으므로 학폭위 개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에게 사과편지를 써서 청구인의 담임교사에게 드렸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피해학생과 화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청구인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멀미로 인해 버스를 타지 못한다. 전학을 갈 바엔 자퇴를 하겠다고 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전학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저 학교가면 A학생 후려칠 거예요’라는 문자를 2019. 5. 2. 담임교사에게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담임교사가 제출한 휴대폰 문자 수신 기록에 의하면 2019. 5. 10. 학폭위 개최된 직후인 2019. 5. 11. 전송된 것이 명백하다. 2019. 6. 12. ◎◎학교 학폭위 안건은 청구인이 2019. 5. 11. 담임교사에게 보낸 위 보복성 협박문자이므로, ◎◎학교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동일한 건으로 이중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 측은 반성하고 있으며 화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심절차에서 담임선생님이 문자 수신 날짜를 조작하였고 청구인을 수업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 등 청구인을 일방적으로 차별하였다고 학교의 잘못만 주장하였는바, 청구인 대리인의 주장 내용 및 태도로 보아 청구인 측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 나아가 재심 절차에 참여한 피해학생 측이 현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격리를 강력히 원하였는바,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는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의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에 대한 서면을 통지받고, 직접 학폭위에 참석하여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비록 위원회 전일에 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차상 하자로 볼 수는 없다.

마. 청구인측은 전학으로 인한 통학 불편, 전학을 갈 바엔 자퇴를 하겠다며 전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해학생들이 현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 취지, 청구인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의 보호, 그리고 학생들 모두의 장래를 고려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 결정한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위법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근거 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2.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5. 11. 담임교사에게 "저 학교 가면, A학생 후려 칠 거에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나. 청구인은 중증도 ******병을 앓고 있다.
다. 2019. 5. 10. 5호 심리치료 처분조치 이후에도 피해학생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라. 피해학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학교 학부모 및 학생들이 청구인의 전학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전학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청구인은 ◎◎학교는 학폭위 개최 하루 전날, 학폭위 개최에 대한 서면을 등기우편이 아닌 학생 편에 보냈으므로 학폭위 개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폭위 개최 안내문이 전달된 이상 이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의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 하루 전에 서면으로 통지 받았으나, 이를 문제 삼지 않고 학폭위에 참석하여 충분히 의견 진술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전학 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1) 청구인이 '저 학교가면 A학생 후려칠 거예요'라는 문자를 2019. 5. 2. 담임교사에게 보낸 것인데, ◎◎학교 측에서는 2019. 5. 11. 발송한 것으로 증거 조작하여, 2019. 5. 10. 5호 심리치료 처분 조치를 받아 이미 처분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재차 학폭위를 개최하여 2019. 6. 14. 전학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중복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자는 2019. 5. 11.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조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중복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청구인은 2019. 5. 10. 5호 심리치료 처분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담임교사에게 A학생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피해학생들에게 공격

적인 행동(눈이 마주치면 갑자기 돌변하여 주먹을 쥐고 다가감)을 보였다. 이에 A학생은 청구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피해학생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피해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피해학생들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점, 청구인은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학교폭력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치료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청구인은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청구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해학생의 관계가 쉽사리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학생들이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학조치를 통해 청구인과 피해학생들을 분리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결론

청구인에 대한 ◎◎학교장의 전학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가 없다. 따라서 전학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Ⅴ.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